

# 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관한 연구

신 태 섭\*

- I. 서론
- II. 의료 해외진출 관련 법제
  - 1. 한국
  - 2. 러시아
- III. 러시아 보건의료 현황 및 체계와 블라디보스톡 진출 사례
  - 1. 러시아 보건의료 현황 및 체계
  - 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진출 사례
- IV. 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 전략
  - 1. 진출 타당성 분석
  - 2. 진출 모델 분석
  - 3. 진출 절차 분석
- V. 결론

## I. 서론

러시아 정부는 높은 사망률, 의료진의 낮은 진료수준, 부정부패 등으로 인하여 자국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자, 2012년경 국민 건강상태의 향상을 목표로 1차 의료 및 예방의료 발전을 위한 ‘국가 보건프로그램 2020’을 발표한다. 반면에 러시아 국민들의 해외 의료관광은 점차 증가하게 되어, 2014년 기준으로 해외치료를 받은 러시아 환자 수는 연간 약 15,000명에 이르

\* 논문접수: 2016. 11. 29. \* 심사개시: 2016. 12. 14. \* 게재확정: 2016. 12. 27.

\*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게 되었다. 특히 2014년 한·러 양국간 상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이후에 의료 목적의 러시아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한국 내 외국인 의료관광객 중 러시아 환자 수는 20,856명(7.0%)으로 중국(33.4%), 미국(13.8%)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러시아 국민들은 주로 내과진료를 위하여 한국을 찾았고, 그 외에는 검진 및 산부인과 진료를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러시아 환자들은 암 등 중증 혹은 만성 질환으로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환자의 평균 진료비보다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소득의 증대로 미용의료나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러시아 극동은 지역적으로 러시아 내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큰 장애요소가 되었고,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의 의료산업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 최신식 시설을 갖춘 극동연방대학교 부속병원을 설립하였고, 선진의료체계를 갖춘 외국 의료기관과 의료진 유치 계획 등 현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극동 지역 중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연해주)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약 6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은 한국과 가장 근접한 러시아 도시로써 일정한 의료 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한국 의료기관들의 진출 대상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진출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선행 연구들은 있었으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만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제정 이후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은 기존의 진출 방식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법령과 정책에 부합하는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이루어졌다.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 2016.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9. 3.

## II. 의료 해외진출 관련 법제

### 1. 한국

####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과거 일반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련된 외환거래 및 무역에 관련된 일반법<sup>2)</sup>은 존재하였으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특화된 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의료 해외진출 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나. 주요 내용

##### (1) 의료 해외진출의 정의

같은 법에서는 ‘의료 해외진출’을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등’으로 정의<sup>3)</sup>하고 있다.<sup>4)</sup> 즉, 국외에 의료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외 의료

2)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4) 그 외에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법인의 설립’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국내 법인의 영리성 인정 문제 등의 제기로 최종적으로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우회투자금지조항’이 추가되었다.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물적, 무형적 지원까지도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로 넓게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외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공’까지도 의료 해외진출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외 의료기관에서의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해당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물적 시설의 국외 반출 역시 의료 해외진출로 보는 것이다. 같은 법은 이와 같이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를 넓게 보아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인접 산업군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 (2) 해외진출 신고

같은 법에서는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5)</sup> 이는 허가요건은 아니고 신고요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즉, 해외진출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때의 신고는 행정법상 신고의 요건만 갖추면 주무관청의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인다. 반면에 ‘외국인환자 유치’의 경우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등의 요건을, 유치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sup>6)</sup> 해외진출을 신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sup>7)</sup>인 경우는 반드시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항을 목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7)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특별법상의 법인 등.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권리능력을 보유하는바,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당해 법인이 의료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sup>8)</sup> 만약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sup>9)</sup>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와 같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업무를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해당 지원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 위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3) 우회투자의 금지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sup>10)</sup> 이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1)</sup> 또한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관당연지정제로 운영된다.<sup>12)</sup>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위와 같은 규정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호.

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10) 의료법 제33조 제2항.

11)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3)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에 소재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고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며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4)</sup> 이와 같이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으로 간주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sup>15)</sup>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 의료기관에 투자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법인 등 법인의 비영리성을 선언하고 있는 위 의료법 규정 등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는 ‘우회투자금지’ 규정을 마련하였다.<sup>16)</sup>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회투자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7)</sup> 그러나 시정명령 이외에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회투자금지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7)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호.

#### (4) 정부의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의료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자문 및 협상·협약 지원, 해외 정부와의 환자 송출, 보건의료제도 컨설팅 또는 의료인 면허 인정 등 인허가 관련 협약,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외국 의료인 대상 연수 지원 및 이를 위한 기관간의 협력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sup>18)</sup>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sup>19)</sup> 아울러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sup>20)</sup> 다만 이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 병원들이 국내 보다 수익성이 좋은 해외진출에 더 투자하게 되는 경우 병원 자산의 해외유출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의료 해외진출 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sup>21)</sup>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행정기관간의 업무 협의 및 종합계획을 수립한다.<sup>22)</sup>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정책의 추진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up>23)</sup>

---

1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2. 러시아

### 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러시아 정부는 대외정책 과제로 ‘유로·태평양국가’라는 정체성을 주장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적극 진출하겠다는 ‘신동방정책’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신동방정책은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본격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블라디보스톡’을 ‘극동의 수도’로 격상시켜 아태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공항 개보수, 금문교 설치, 루스키 섬 개발 등 천문학적 투자를 블라디보스톡에 투자하였으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sup>24)</sup> 특히 2010년을 전후하여 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한 교역 감소 및 투자 감소가 이어지자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교역 및 투자 협력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sup>25)</sup> 위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톡 항만을 중심으로 국경간 무역 촉진 및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연해주 지역을 아태지역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류흐름(운송, 저장 및 화물 처리 등) 촉진을 위한 투자 유치 및 물류센터 네트워크 창설을 위해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2015년 7월 통과시켰고, 같은 해 10월 13일부로 효력이 발생되어 현재 관련 개정안 및 세부 시행세칙이 준비 중에 있다. 최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제정과 관련하여 자유항 입주 허가를 취득한 외국 병원의 경우 자유항 구역 내에서 본국과 같은 수준의 의료활동을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고,<sup>26)</sup> 블라디보스톡 지역 내 루스키 섬 선도개발구역에서는 여타 선도개발구역과는 달리 제조업 진출을 배제할 예정이며, 교육, 관광, 의료 3개 클러스터로 구분하여 ‘작은 싱가포르’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4) 윤성학,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러협력 방안”, 수은북한경제, 2015, 33~34면.

25)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극동개발 추진현황과 한·러 경제협력 방안, 2015. 6., 1면.

26) 신현식, “선도개발구역법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전국경제인연합회·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기회 세미나, 2015, 22면.



## 나. 주요 내용

### (1) 입법 목적 및 적용 지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은 블라디보스톡 항만을 중심으로 국경 간 무역 촉진 및 교통 인프라 개발을 통해 연해주 지역을 아태지역 물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같은 연방법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물류흐름 촉진을 위한 투자 유치 및 물류센터 네트워크 창설, 자유항 지역 내 수출지향적 비광물 산업 및 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연해주 및 블라디보스톡 항구의 지정학적 요소 활용을 통한 러시아의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으로의 편입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sup>27)</sup>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자유항법의 적용 지역과 관련하여 블라디보스톡 항만뿐 아니라, 연해주 여타 15개 주요 도시<sup>28)</sup>에 걸친 폭넓은 지정을 통하여 향후 70년간 이를 운영할 예정에 있다.<sup>29)</sup>

### (2) 감독 및 운영기관

감독이사회는 최고 관리기관이며 러시아 부총리(위원장), 극동개발부 장관, 연해주지사 등 지자체장, 예산·조세·관세 분야 행정기관장으로 구성되며, 자유항 운영·발전에 관한 정부기관 업무 조정, 자유항 운영 효율성 평가, 자유항 발전계획 검토·승인, 이행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권한기관인 극동개발부는 입주자 등록 관련 제반절차 승인, 입주기업의 협약이행 점검, 감독이사회 활동지원, 연방소유 토지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권한 및 기능은 국영관리회사(선도개발구역법에 의한 국영관리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

27) 신현식, 앞의 논문, 21면.

28)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포그라치느이(중국 수분하 접경), 하산(중국 훈춘 접경), 나테진스크, 아르ი시, 불쇼이 카멘, 우스리스크, 파르티잔, 쉬코톱스크, 옥타블스크, 한카이스크 등.

29)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개요, 2015. 7. 30., 6면.

양도 가능하다. 공공위원회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이사회 산하에 설치되고, 사회단체, 기업인연합회, 소비자연맹, 학술단체, 전문가그룹의 대표자들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운영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3) 의료활동 특별규정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 내 의료활동은 동 조항에서 기타 규정이 없을 경우 2011. 11. 21.자 제323-FZ호 「러시아 연방 내의 국민 건강보호 기반에 관한 러 연방법률」을 근거로 진행한다. 러시아 정부는 해외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입주기업으로서 자유항 구역 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승인하고 면허를 발급하며 외국인에 대한 의료지원 제공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포함시켰다.<sup>30)</sup> 그리고 자유항 입주 허가를 취득한 외국 병원의 경우, 자유항 내에서 의료활동 가능 여부를 연방법상 검토 중에 있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중 의료산업과 관련한 주요 혜택은 입주자 지위 취득 시 외국 의료면허 허용, 소득세 및 지방세 감세 혜택, 통관 절차 및 비자 간소화 혜택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중 외국 의료면허 허용의 경우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수준의 제도개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주 무부처인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역 진출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내용을 제안할 경우 향후 관계 법령 제·개정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30)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제17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구역내 의료활동 특별 규정

1. 자유항 구역내 의료활동은 동 조항에서 기타 규정이 없을 경우 2011. 11. 21.자 제 323-FZ호 「러시아 연방 내의 국민 건강보호 기반에 관한 러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짐
2. 러 연방 정부는 해외의료교육을 받은 자가 입주기업으로서 자유항 구역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승인하고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외국인에 대한 의료지원 제공 절차를 이행함

### III. 러시아 보건의료 현황 및 체계와 블라디보스톡 진출 사례

#### 1. 러시아 보건의료 현황 및 체계

##### 가. 러시아 보건의료 현황

러시아는 인구 약 1억 4350만명을 보유한 세계 9위 인구대국이나, 보건의료지출은 2015년 882억불로 GDP 대비 6.7% 및 1인당 614.5불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5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이고, 평균 수명은 70.7세로 OECD 평균 수명인 80.5세와 비교하여 약 10년 차이를 보이나,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sup>31)</sup> 러시아 연방 보건부 산하 18,800여개의 의료기관 중 31.5%가 보수를 요하는 상태이고, 4.9%가 재건축, 1.7%가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은 최첨단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심혈관질환, 중앙질환, 장기이식, 안과, 정형외과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sup>32)</sup>

##### 나. 러시아 보건의료체계

러시아 보건의료체계는 러시아 연방 헌법 제41조 제2항과 국민건강보호 기초에 관한 연방법률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국영, 지방자치단체, 민영으로 나뉜다. 국영 보건의료체계에는 행정부 산하 연방기관들과 러시아 연방주체(주, 지방, 시, 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등) 내 보건행정당국, 러시아 의료과학 연구소, 그 외 국영 보건기관,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의약품 유통기관, 방역·위생기관들과 관계 기업들이 속한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보건의료체계에는 국가로부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자체적 운영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들과 이에 귀속된 의료기관, 제약 및 의약품 유통 기관들이 속한다. 민

31)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2015.

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분석 및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2014.

영 보건의료체계에는 사적 소유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유통 기관들과 사립 형태의 제약 활동을 하는 자들이 속한다. 오늘날 러시아 보건의료 체계는 위 세 주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단일 보건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으며, 러시아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 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진출 사례

### 가.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진출 시도

#### (1) 명지병원

러시아 환자들의 한국 방문이 증가하게 되고, 그 중 60% 이상이 건강검진 환자일 정도로 건강검진 특히 한국형 종합검진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현지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명지병원은 연해주 정부와의 협작을 통하여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블라디보스톡 체료모호바이야에 위치한 국립 연해주검진센터 빌딩의 1층에 1,785㎡의 규모로 국제검진센터를 진출하는 방식 즉 원내원 방식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진출하고자 하였다.<sup>33)</sup> 명지병원이 의료기관의 형태 중에서 건강검진의 형태로 진출을 결정한 이유는 직접적인 의료 인력을 파견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여 외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인력의 파견을 최소화하고도 러시아 현지 인력만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 및 수익 창출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명지병원은 현지 파트너 선정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와 주정부의 각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신뢰할 만한 민간 사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비즈니스의 관행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연해주 정부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주정부 담당 공무원의 교체 등을 사유로 현재는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병원 서비스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_러시아\_명지병원, 2013.

## (2)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2011년 2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한국관광공사 지소 내에 U-헬스 화상 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러시아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일견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2011년에 이곳에서 상담을 받은 환자 중 15% 이상이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건강검진과 진료를 받기 위해 방한하였고, 2013년에는 환자진료 상담건수가 500건을 기록하여 유의미한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나. 외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진출 현황

### (1) 일본 호쿠도 병원

호쿠도 병원(Hokuto Medical Vladivostok)은 일본사회의료법인 호쿠도가 소유하고 있고, 2013년 6월 블라디보스톡 마콥스코보로에 설립되었다. 호쿠도 법인은 아시아 각국에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무역업과 의료관광업을 하는 PJI(일본회사)의 제안으로 블라디보스톡 진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분비율은 호쿠도 법인이 49%를, PJI, AKIRA(러시아회사), CAH 요양원이 나머지 5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sup>34)</sup> 호쿠도 병원은 설립 초기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긴 하였으나 이는 경제부처에서 지원해준 것으로써, MEJ(Medical Excellence Japan)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sup>35)</sup>

검진항목은 기초검사, 진단검사, 초음파, CT, MRI 등이고, 예방의학을 목적으로 현지 성인 대상 뇌, 심장 위주의 검진을 하고 있다. 총 8개의 진료과목으로 운영 중에 있고,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환자의 영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원 병상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sup>36)</sup> 검진센터 운영만으로는

34) 2013년 설립 당시 일본법정상 해외진출 시 50% 이상 지분취득을 금지하고 있었다. 현재 이를 규제하지 않으나, 호쿠도 병원은 위 지분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35) 반면에 국내 일부 자료에는 호쿠도 병원이 MEJ의 모범사례로 보고되어 있다.

36) 참고로 뇌혈관, 심장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MRI 기기를 이용하는 러시아 의료기관

수익이 낮아 진료실을 함께 운영하는데, 진료실이 검진센터보다 수입비중이 높은 편이다. 의료장비인 MRI, CT 등은 전부 일본제품으로서 이미 러시아(모스크바)에 등록된 일본장비들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일본에서 직수입하였고, 의약품은 러시아 현지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개원년도에는 일본 의료기사들이 있었으나, 2년차부터는 전원 러시아 인력으로 운영하여 현재 인력은 전부 러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인력의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의사는 60,000~70,000루블, 간호사 30,000루블, 의료기사 30,000루블 정도이다.

일일 내원 환자 수는 일평균 30명 정도 수준이다. 주된 고객은 민간의료보험 활용이 가능한 중산층이며,<sup>37)</sup> 그 이유는 부유층의 경우 일본이나 한국 등으로 직접 방문하기 때문이다. 국가의료보험 환자는 팔크 병원과 마찬가지로 진료하지 않고 있다. 상세한 수가는 홈페이지<sup>38)</sup>에 게시되어 있고, MRI 등 의료수가는 한국에 비해 약 1/10 수준이며, 이는 블라디보스톡 시내 소재 병원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에 해당한다.

해당 병원의 장점은 MRI, CT 촬영 시 모든 촬영결과가 일본으로 자동 전송되어 원격판독이 된다는 점이다.<sup>39)</sup> 호쿠도 병원에서 자체 판독도 가능하지만, 정밀한 판독은 이유를 부기하여 일본으로 전송하여 답변을 받고 있다. 현재 3년차 병원으로 수익 자체가 미미하고, 수익이 발생하여도 운영상 자체 소비를 하고 있으며, 일본으로 송금할 정도의 운영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2) 덴마크 팔크 병원

팔크 병원(Falck Medical Vladivostok)은 덴마크 응급시스템 창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덴마크 국적 의료기관 중의 하나이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

수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37) 사보험 혜택은 크지 않으며 거의 대부분 본인부담금이 차지한다.

38) <http://www.hokuto.ru/>

39) MRI 촬영 시 익일에 판독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고, 당일에도 판독 및 결과 안내도 가능하나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르크 지역과 달리 의료시스템이 부족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의료시장 선점을 위해 진출한 지점병원이다. 순수 덴마크 팔크사 자본으로 설립되었고, 응급의료시설 외 병원시설까지 갖춘 지점은 블라디보스톡 지점이 유일하며, 블라디보스톡 자빠로쉬까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진료과 16개, 30~32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소속 인력은 전원 러시아인으로서 총 근무 인원은 의료진 포함 180명 정도 규모이며 동 수치는 수시로 변동된다. 의료인력의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의사는 40,000~120,000루블,<sup>40)</sup> 간호사는 30,000~40,000루블, 의료기사는 30,000~40,000루블로 확인된다.

환자는 일평균 100~150명 정도 수준이고, 주된 고객은 부유층부터 빈민층까지 다양하다. 국가의료보험은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환자들만 진료하고 있다. 상세한 수가는 홈페이지<sup>41)</sup>에 게시되어 있으며, 초진비는 2,200~2,500루블 정도이다.

해당 병원의 장점으로는 최신 의료장비, 청결한 의료시설, 투명한 운영 등을 들고 있다. 설립 초기에 환자 진료 영역은 현지 인력이 충분히 있어서 덴마크 의료진이 체류하면서 시스템 구축과 의료기술을 전수할 필요가 없었으나, 환자 관리 영역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필요하였다. 병원 개설·운영상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러시아 행정청이 최초 개설허가 시 비효율적인 개설준비사항을 요구하였고,<sup>42)</sup> 러시아 담당 공무원들이 비리 등을 이유로 자주 교체되는 경향이 있어 공무원과의 장기적인 관계유지 등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현재 루블화 가치하락과 함께 수익 자체가 송금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40) 준의사는 비공개 상태임.

41) <http://falckmed.ru/>

42) 예컨대 신형 소화기 이외에 모래함 같은 구형 소화장비 설치까지 요구하는 것 등.

## IV. 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 전략

### 1. 진출 타당성 분석

#### 가. 서설

구체적인 진출 모델 및 그에 따른 진출 절차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관한 가능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SWOT 분석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 나. SWOT분석

첫째, 강점(Strength) 요인으로, 의료선진국 수준의 한국 의료기관의 의료 기술·장비·서비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러시아 환자의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약점(Weakness) 요인으로, 러시아 법·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유항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의료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낮은 수준의 현지 의료 인력의 문제점,<sup>43)</sup> 투명성이 보장된 현지 파트너 모색의 어려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의료시장의 정확한 데이터 부재,<sup>44)</sup> 언어·문화적 장벽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기회(Opportunity) 요인으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제정 등에 따른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정책 방향,<sup>45)</sup> 한국 정부

43) 진출 지역 의료인력의 임금이 낮아 현지 의료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나, 현지 의료인력은 의료기술이 떨어지고, 최신 의료장비에 대한 숙련도가 낮으며, 의료서비스 마인드도 부족한 문제점 등이 있다.

44)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에는 하위항목으로 연해주 단계까지의 통계자료가 있고, 블라디보스톡시 홈페이지 공식자료 등에는 의료시장 관련 공식 데이터가 없다.



가 러시아 정부에게 제안이 가능한 유리한 환경,<sup>46)</sup> 극동개발기금 등의 투자유치 가능성, 극동연방대학교 부속병원 등 현지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러시아 국민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여 진료대상 환자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넷째, 위협(Threat) 요인으로, 자유항법 개정 및 하위규정 제정의 지연,<sup>47)</sup> 러시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낮은 신뢰도,<sup>48)</sup> 극동연방대학교 부속병원, 연해주 주립병원, 블라디보스톡 시립병원, GDG, GMC 등 러시아 자국 의료기관의 기득권과 경쟁력,<sup>49)</sup> 호쿠도 병원, 팔크 병원 등 자유항내 기 진출한 외국 의료기관들의 경쟁력, 수요측면에서 바라본 자유항 의료시장의 한계,<sup>50)</sup> 의료분쟁 발생 시 명확한 해결방안(기준)의 부재, 러시아 정부의 과실송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sup>51)</sup> 등이 있다.

## 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러시아 환자의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러

45)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대외 투자유치 전략은 과거 특정 산업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태국가 중심의 경제협력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대상국가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한·러 경험모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외국 법인의 의료사업자 허가뿐 아니라 면허 인정을 통한 의료활동이 가능하고 행정·세무적 인센티브도 자유항내 입주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46)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와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해서 극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협력모델을 창출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접근 전략에 변화를 주었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중심'으로 경제협력이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

47) 현재 기준으로 자유항법 개정안, 자유항법 하위규정 제정안 모두 러시아 행정부 준비단계에 있고, 자유항법과 관련된 타 법령(12개)들도 개정 중에 있다.

48)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비효율적인 항목 요구,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인사이동, 관계공무원의 비리연루 등을 들 수 있다.

49) 국내 일부 자료는 러시아 의료진의 낮은 IT활용능력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50) 자유항 진출 시 주요 환자군으로 민간보험 활용이 가능한 중산층이 그 대상이 된다.

51) 러시아 정부는 자유항내 외국 의료기관의 수익을 러시아내에 재투자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시아 정부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정책 방향 등은 강점 및 기회로써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강점과 기회 이면에는 약점과 위협도 병존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 등 법·제도의 미비에 따른 법적 불안전성과 러시아 행정부 및 지방정부의 낮은 신뢰도 등은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제반 법·제도,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는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등의 제정절차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진출 시기를 신중히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 2. 진출 모델 분석

### 가. 서설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등의 제정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 및 그 시기를 결정할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진출 모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겠다.

첫째 ‘진출 유형별’ 검토로써 ① 독자 진출 모델, ② 현지병원 연계 모델, ③ 현지기업 연계 모델, ④ 외부금융 조달 모델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진출 단계별’ 검토로써 ① 1단계(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 ② 2단계(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모델), ③ 3단계(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 전문병원 모델), ④ 4단계(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 전문병원 → 종합병원 모델) 등이 제시될 수 있겠다.

### 나. 유형별 진출 모델

#### (1) 독자 진출 모델

이 모델은 한국 의료기관이 타 병원(또는 기업)과의 연계나 외부금융의 조

달 등이 없이 100% 자기자금으로 진출하는 형태로써 의료 해외진출 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의 장점으로서는 한국 의료서비스·기술의 보호, 글로벌 전략의 용이한 조정<sup>52)</sup> 등이 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높은 투자비용, 현지리스크 감소 방안의 부재 등이 제시될 수 있다.

## (2) 현지병원 연계 모델

현지병원 연계 모델은 다시 ‘현지병원 위탁운영 모델’과 ‘현지병원 협력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현지병원 위탁운영 모델’은 한국 의료기관이 러시아 현지병원의 경영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형태로써 자유항에 진출하고자 하는 병원들 중에서 종합병원이 선호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한국 의료기관이 큰 자금의 출자 없이 의료인력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델 운영 시 지급받는 위탁운영비가 낮을 경우 별도의 지원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한 체크사항이다. UAE에 진출한 서울대병원 사례<sup>53)</sup>를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현지병원 협력 모델’은 한국 의료기관이 러시아 현지병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현지리스크를 줄이는 형태이다. 즉 한국 의료기관과 현지병원이 협력체계를 통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극동개발부, 연해주정부, 극동연방대학교 부속병원 등이 한국 측에 제안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상호협력체계를 통하여 한국 의료기관은 병원경영노하우, 의료기술, IT 등을, 현지병원은 병원부지 및 시설, 의료인력, 기타 제반 행정사항 등을 각각 분담하는 것이다.

52)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진출전략의 신속한 수립과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다.

53) 한국 서울대학교병원은 2014년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운영하는 ‘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 (3) 현지기업 연계 모델

이 모델은 한국 의료기관이 러시아 현지기업과 별도 ‘JVC(Joint Venture Company)’ 등의 설립을 통하여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모델의 장점으로는 러시아 정부의 인·허가가 용이하고, 재원 마련 부담이 적으며, 현지 파트너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비용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한국 의료서비스·기술 보호의 어려움, 글로벌 전략을 위한 조정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겠다. 진출하고자 하는 병원 중에서 전문병원이 선호하는 모델이고, 의료면허 인정과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계 상대방으로 러시아 현지기업 이외에 현지의료기관도 가능하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 사례<sup>54)</sup>가 그 예이다.

### (4) 외부금융 조달 모델

이 모델은 한국 의료기관이 자유항 진출 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색될 수 있는 형태이다. 투자를 모색할 수 있는 외부금융으로 국내금융은 한국의료시스템해외진출전문펀드,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국내사모펀드 등이, 국제금융은 국제사모펀드, 해외기금 등이, 러시아 현지금융은 극동개발기금 등이 각각 있다.

## 다. 단계별 진출 모델

### (1) 1단계 모델(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내 외국 의료인 면허인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의료인 면허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실행이 가능한 영역은 러시아 의료인 교

54) 합작계약 상대방이 현지기업이 아닌 현지의료기관인 경우로는, 한국 참튼튼병원이 중국 링베이병원과 한중합작계약을 통하여 중국 링베이병원 내 ‘Zhen Tingting(첸팅팅) 척추·관절센터’를 개설·운영한 사례, 한국 베스티안병원이 중국 하얼빈시제5병원과 한중합작계약을 통하여 중국 하얼빈시제5병원 내 ‘화상피부재건재활센터’를 개설·운영한 사례 등이 있다.

육·연수, 병원 운영 컨설팅, 건강검진 등이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원격진료가 가능하고 이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신 의료장비를 구비한 극동연방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에도 MRI는 통상 대기기간이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CT는 연 횡수 제한으로 대기기간이 무기한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검진센터’ 운영이 일차적으로 모색될 수 있겠다.

다만 검진센터 운영만으로는 병원의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분야로 특화된 진료’를 검진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전문분야로는 암, 외과, 심장질환, 심혈관, 성형, 피부과 등이 제시될 수 있겠다. 참고로 자유항내 기 진출한 외국 의료기관인 호쿠도 병원이 이러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자유항 진출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1단계로써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이 제시될 수 있겠다.

(2) 2단계 모델(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모델)

강남세브란스병원이 2011년 2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한국관광공사 지소 내에 U-헬스 화상 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기는 하나, 한국 의료관광을 가는 러시아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극동연방대학교 부속병원을 비롯한 블라디보스톡 내 러시아 자국병원들은 의료과실 책임 문제로 인하여 한국 의료관광을 다녀온 자국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한국 의료관광 환자들에 대한 사전관리(Precare), 사후관리(Post-care) 측면에서 2단계 모델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일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경우 중기적인 2단계로써 ‘사전·사후관리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3단계 모델(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 전문병원 모델)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극동연방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에도 암, 심장질환,

심혈관 등 분야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모델’이 일정한 경영수익을 나타내면 중·장기적으로 3단계로써 ‘전문병원’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3단계인 전문병원에서의 전문분야도 1단계인 전문클리닉과 동일하게 암, 외과, 심장질환, 심혈관, 성형, 피부과 등이 제시될 수 있겠다.

(4) 4단계 모델(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 전문병원 → 종합병원 모델)

3단계인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 전문병원 모델’의 운영에 따른 경영수익 창출 현황에 비추어 장기적으로 4단계인 ‘종합병원’까지 모색해 볼 수 있는 최종모델이다.

#### 라. 소결

위와 같이 유형별 모델 측면과 진출 단계별 모델 측면에서 가능한 모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진출 유형별 모델’ 측면에서 보면, ‘독자 진출 모델’은 높은 투자비용과 위험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현지병원 위탁운영 모델’은 러시아 자국 의료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국립병원이라는 점, 자유항내 극동연방대학교 부속병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도입이 어려운 모델로 판단된다. 이에 ‘현지병원 협력 모델’과 ‘현지기업 연계 모델’이 가장 유력하고 동 모델들에 ‘외부금융 조달 모델’이 융합된 형태 즉 ‘혼합모델’이 가장 현실성 있는 모델이라 하겠다.

한편 ‘진출 단계별 모델’ 측면에서 보면, ‘전문병원 모델’과 ‘종합병원 모델’은 현지리스크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진출 병원의 안정적인 현지 정착과 향후 단계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1단계 모델인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이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제시될 수 있겠다.

나아가 자유항법에는 의료기관 설립자 제한 규정이 없는바, 한국 의료기관

이 러시아 기업(또는 의료기관)과 현지 'JVC(Joint Venture Company)'를 설립하여 자유항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한국 의료기관이 러시아 기업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JVC를 설립한다는 점, 자금조달 역시 한국 의료기관과 러시아 기업이 대부분을 마련하여 극동개발기금 등의 일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JVC는 러시아 연방법상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비공개형)' 형태가 가장 타당하겠다.<sup>55)56)</sup> 다만 한국 의료기관과 러시아 기업은 모두 자국 내에서 검증된 의료기관, 기업일 것이 요구된다.

### 3. 진출 절차 분석

#### 가. 서설

위에서 살펴본 가장 현실적인 진출 모델을 기초로 민간 영역과 정부 영역을 나누어 합리적인 진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전자인 민간 영역으로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의료기관이 국내, 국외 측면에서 진행해야 할 절차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후자인 정부 영역으로써 한국 의료기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구축해야 할 진출여건과 환경을 분석하도록 한다.

#### 나. 민간 영역

##### (1) 국내(한국) 절차

##### (가) 자유항 의료시장 조사 및 분석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련 국내외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자유항내 의

---

55) 러시아내 법인 설립 유형은 러시아 연방 민법, 유한회사법, 주식회사법 등에 의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공개형, 비공개형) 등이 있다.

56) 참고로 현재 상당수 러시아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로 활동하는 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비교해 기업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설립절차가 간소하며 지분 소유자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관리가 편리(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주주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발행주식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음)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회사(비공개형) 보다는 '유한회사' 형태가 비교적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료시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분야로써 ‘암, 외과, 심장질환, 심혈관, 한의학(대체 의학)’ 등의 현지 수요정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나) 자유항 진출 전략 수립 및 파트너십 구축

러시아 현지기업(또는 현지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현지 JVC(Joint Venture Company)을 설립한 후 그 JVC를 통하여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한다는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당해 병원의 중장기 사업전략은 물론 자유항 의료시장 현황, 환율 등 병원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한 대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유항 내 최적의 병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이는 MOU를 체결할 현지병원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러시아 현지병원과 MOU 체결을 통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과 러시아 현지기업과의 현지 JVC 설립 절차를 각각 준비한다.

#### (다) 자유항 진출 투자계획 확정

자유항 진출 투자계획은 진출 사업의 성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자유항 의료시장 정보 조사, 진출사업 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의 투자에 소요되는 총금액을 의료법인 순자산<sup>57)</sup>의 100분의 30 이내로 설정하여야 하고,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sup>58)</sup>

57)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58)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2014. 7. 참조.



(라) 자유항 진출 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자금 송금

한국 의료기관과 러시아 현지기업간의 계약에 따른 현지 JVC 설립은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고,<sup>59)</sup>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은, 주 채무 소속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을, 주 채무 소속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을,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지정하는 은행을 각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sup>60)</sup>

자유항 진출 투자자금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에 따라 1년 내에 송금하면 되고, 그 기간 내에 송금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당해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만 한다. 투자자금은 현금과 현물 이외에 현지와 JV(Joint Venture)인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도 불입이 가능하며, JV 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 참고적으로 신고를 접수한 은행은 송금된 투자자금이 신고한 내용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자유항 주재인력 파견 및 현지핵심인력 국내교육

현지 JV인 경우 JV 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자유항 주재인력 파견에는 많은 준비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핵심 중요업무에만 파견하도록 하고, 나머지 인력은 현지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재인력 파견 시 어학교육, 현지문화 교육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자유항 체류 비자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요청된다. 만약 사전에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출장자 신분으로 현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자유항 현지인력 중 핵심인력은 사전에 국내연수를 진행하여 한국 의료기관의 문화를 습득시키고 향후 국내 의료진과의 문화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9)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60) 제출서류로는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투자자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추가제출서류로는 JV 투자 시 JV 계약서, 현물투자 시 현물투자명세서, 매 송금 시 납세증명서 등이 요구된다.

(2) 국외(러시아) 절차

(가) 사업자 간 자유항 진출 협력 MOU 체결

한국 의료기관과 러시아 현지병원 간에 한국 의료기관 자유항 진출 협력 MOU를 체결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특히 한국 의료기관은 경영노하우, 의료기술, IT 등을 중심으로, 러시아 현지병원은 병원부지 및 시설, 의료인력 보장, 기타 제반행정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나) 현지기업과의 JVC 설립 및 신고

한국 의료기관과 러시아 현지기업 간의 현지 JVC(Joint Venture Company) 설립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먼저 현지 JVC가 ‘유한회사’인 경우 러시아내 유한회사의 설립절차에 따른 법인의 국가등록 절차를 살펴보면,<sup>61)</sup> ① 정관·설립결의서 작성<sup>62)</sup> → ② 사업자번호 신청서, 납세번호 신청서 작성 → ③ 서류<sup>63)</sup>의 공증 → ④ 설립수수료 납부 → ⑤ 법인등록 등기서류<sup>64)</sup> 제출 → ⑥ 사업자등록증 등<sup>65)</sup> 수령 → ⑦ 회사 직인의 신청<sup>66)</sup> 및 등록 → ⑧ 각종 기금<sup>67)</sup> 및 통계청 신고 → ⑨ 공식 은행계좌 개설<sup>68)</sup> → ⑩ 국제청 신고<sup>69)</sup> 등의 순서로

61) 러시아 연방 유한회사법(최근개정일 2015. 12. 29.) 참조. 참고적으로 동법은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유한회사의 법적 지위, 설립절차, 조직개편, 청산 및 주주와 사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제외한 은행, 보험, 투자활동 등에 관한 회사의 법적 지위와 설립, 조직개편, 청산절차와 국가의 안위에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회사 및 외국인 투자자에 관하여는 동법이 아닌 다른 연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자유항법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동법이 유한회사 설립의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겠다.

62) ‘정관’에는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거래형태, 주주에 대한 권리, 주주의 명단 등이, ‘설립결의서’에는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등이(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주의 명단, 각 주주별 출자비율 등을 명시한 주주계약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각 기재되어야 함.

63) 정관 2부, 설립결의서 2부, 설립신청서 1부.

64) 정관 2부, 설립결의서 2부, 설립신청서 1부, 설립수수료 납부 영수증, 위임장.

65) 정관 1부, 설립결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세무서등록증(납세번호 기재), 각종 통계번호.

66)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직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

67) 연금기금,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진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현지 JVC가 ‘주식회사(비공개형)’인 경우 위 유한회사와 동일한 설립 절차(①~⑩)를 마친 후 ⑪ 증권거래소 등록<sup>70)</sup> 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국외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의료해외진출신고서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국외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한국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up>71)</sup>

(다) 극동개발기금 사전검토 요청 및 신청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 사업은 「러시아 연방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 상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되고, 이는 ‘러시아 연방법에 규정된 기획설계문서를 포함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합목적성, 규모, 기간을 명시한 근거’를 의미한다.<sup>72)</sup> 따라서 자유항법 하위규정 및 극동개발기금신청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은 ‘경제적 합목적성, 규모, 기간’ 등을 중심으로 극동개발기금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현재 극동개발기금은 5억불을 보유하고 있는바, 자유항내 한국 의료기관 설립 시 설립비용 중 최대 약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sup>73)</sup>

극동개발기금 신청서 초안이 마련되면, 극동개발기금에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서, ‘극동개발부’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극동개발

68) 필요서류: 회사 등기부 등본 사본, 회사 등록증, 회사 정관 사본, 계좌 개설 신청서, 납세자 고유번호 증명서 사본, 납세 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자본금 증명서,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국가통계위원회 증명서, 위임장, 지사장 및 회계사 여권 사본, 은행 약정서.

69) 공식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신고.

70) 필요서류: 납세등록증 사본, 정관 사본, 자본금 증명서, 증권거래소 등록 양식, 증권 등록 신청서, 주식발행서 사본, 주식회사 서류 목록.

7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72) 러시아 연방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 제2조 참조.

73) 실무적으로 극동개발기금 지원 규칙이 2016년부터 일부 변경되었으며, 향후 변경되는 내용을 수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경우 순차적으로 극동개발기금에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라) 병원시설 설치 및 현지인력 채용

한국 의료기관과 러시아 현지기업 간에 설립된 현지 JVC(Joint Venture Company)를 통하여 본격적인 자유항내 의료기관 개설·운영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먼저 병원건축 및 설비설치 절차가 요구되고, 해당 항목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병원은 직접 건축방식과 투자비 절감을 위한 임차방식이 있고, 후자는 기존 병원건물을 임차하는 방식과 리모델링 후 임차하는 방식이 있다. 둘째, 건축설계능력, 시공방식, 자재조달능력 등 현지업체의 시공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병원건축 시 소방법, 환경보호 대책 등의 준수는 물론 관련 인·허가 사항에 따른 행정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특히 병원설비는 현지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인허가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 사전에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필수품목이 아닌 설비는 현지기준에 의거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진 의료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관련 사항들은 MOU를 체결한 러시아 현지병원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에서 파견한 주재인력을 통하여 현지인력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러시아 현지인력을 채용하며, 해당 현지인력들을 병원 운영 준비단계에 참여시켜 향후 병원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현지인력에 대해서는 파견된 한국 의료인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마) 병원 운영계획 수립 및 개설·운영

병원운영 관련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현지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제도, 문화 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식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자권리장전,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전담인력 등의 제도를 동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병원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최종점검을 통하여 개원 전에 최종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병원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상작동을 확인한 후 사전에 수립된 병원 운영계획에 따라서 병원을 개원, 운영하도록 한다.

나아가 1단계인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일정한 병원경영 수익을 나타내는 경우 중기적으로 다음 2단계인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3단계인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 전문병원 모델’과 4단계인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 사전·사후관리센터 → 전문병원 → 종합병원 모델’을 각각 순차적으로 분석·진행하도록 한다.

#### 다. 정부 영역

##### (1) 한·러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

한국과 러시아 간 한국의 의료시스템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양국 정부의 지원 내용을 담은 MOU 체결이 필요하다. 주요항목으로는 현지 의료인 면허인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sup>74)</sup> 수익금의 국내 송금 문제,<sup>75)</sup>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sup>76)</sup> 세금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에 한·러 정부 간 실무회의 개최, 협력안 초안 교환 등의 실무절차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한국 의료기관에게 우호적인 내용과 환경을 제안서를 통하여 제안하고, 그 내용이

---

74) 한국 정부는 러시아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한국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게 러시아 행정청의 불허가 시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신태섭, “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제27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6, 291면 참조).

75) 한국과 러시아 간에 국가 간 투자협정(1991), 이중과세방지협정(1995), 조세협약(1995) 등이 체결되어 투자이익의 자유로운 송금이 보장되어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자유항내 외국 의료기관의 수익을 러시아내에 재투자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76) 해외 의약품 진출 시 통상 ‘처방 → 등제 → 정부조달 → JV(Joint Venture) → 독자’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유항 개정안, 하위규정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사업자 간 자유항 진출 협력 MOU 체결 지원

한국 의료기관과 러시아 현지병원 간에 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 협력 MOU 체결이 필요한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 정부는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의료기관이 국내적으로 검증된 병원인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검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3)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한·러 상호 간의 신뢰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러시아 의료인력의 우수한 한국 의료기관 등에서의 교육·연수 제도가 필요하다. 즉 러시아의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우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단기성과 위주의 일회성 무료진료,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지원보다는 러시아 의료진 육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한·러 의료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러시아 현지에 영향력 있는 러시아 의료인에 대한 한국 내 교육·연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과거 ‘미국 미네소타 프로젝트’<sup>77)</sup>에 착안한 한국정부 차원의 소위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하다.<sup>78)</sup>

77)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AID)는 1950년대 한국 원조계획의 일환으로 미네소타주립대에 서울대 교수진을 보내 의학, 농업, 공업 분야의 선진학문 및 기술을 전수시키는 소위 ‘미네소타 프로젝트’라는 교육원조를 진행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1955년부터 7년에 걸쳐 서울대 교수진에게 ‘장단기 초청연수’의 기회를 부여했고, 단기 3개월, 장기 4년 동안 교육비와 숙식비는 미국 정부가 전액 부담했다. 미네소타주립대 자문관은 장단기에 걸쳐 한국에 들어와 서울대 의대, 농대, 공대의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지원했다. 이 과정을 거쳐 서울대 의대 및 병원은 비약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의학 교육과 의사양성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서울대 의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제강점기 경성의대를 지배했던 ‘일본식 이론중심체제’에서 ‘미국식 임상중심체제’로 대전환이 이뤄지고, 병원소독실과 환자복을 비롯한 현대적 의료시스템을 대거 도입하게 된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병원 등 해외 종교단체의 지원과 함께 국내 현대의학의 기초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러시아 내 한국 의료수준의 인지도 제고와 의료기관의 해외네트워크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한국 의료기관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 V. 결론

러시아 의료서비스와 시설·장비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멀어질수록 낙후되어 극동지역 환자들은 모스크바 소재 상급병원을 이용하거나 해외 의료관광을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2011년 극동개발기금 마련, 2012년 극동개발부 설립, 2014년 극동 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전면개정, 2015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 제정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의료기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현지 기 진출 외국 의료기관인 호쿠도 병원, 팔크 병원을 경쟁상대로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은 영토가 광활하고 의료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의료 IT를 이용한 원격의료시스템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항 진출 시 활용 가능한 외부금융으로는 극동개발기금 등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정책 방향 등은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하는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등의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안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 등은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

---

78)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러 보건의료협력 연수 프로젝트’ 역시 그 한 예로 볼 수 있겠다.

서는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등의 제정절차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진출 시기를 신중히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의료기관은 민간차원에서 러시아 현지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극동개발기금 등의 투자를 받아 러시아 현지기업(또는 현지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현지 JVC(Joint Venture Company)를 설립한 후 그 JVC를 통하여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국외 진출 절차를 각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러 보건의료 협력 MOU 체결’을 통하여 현지 의료인 면허인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 수익금의 국내 송금 문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 세금 등에 대한 우호적인 진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간 한국 의료기관 자유항 진출 협력 MOU 체결에 대한 지원을 하며,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한국형 미네소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Outbound 개념인 ‘의료 해외진출’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한정하여 연구한 것인바, 향후 러시아 전역에 대한 후속연구와 Inbound 개념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포함)에 대한 후속 연구 등을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 김선옥·신태섭·정혜승·조진석·조우선·한진,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 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 김학기·김석환·Dmitry Korostelev, “러시아의 극동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정책과 한-러 협력 방향”,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16.
- 변현섭,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 방안: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016.
- 신태섭, “보건의료 행정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27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6.
- 신현식, “선도개발구역법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전국경제인연합회·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과 기회 세미나, 2015.
- 윤성학,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한러협력 방안”, 수은북한경제, 201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9. 3.
-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 2014. 7.
-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개요, 2015. 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보건의료서비스시장 현황분석 및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연구, 201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서, 201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 러시아 진출 가이드, 2014. 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병원 서비스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_러시아\_명지병원, 201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결과, 2016. 5.
-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극동개발 추진현황과 한·러 경제협력 방안, 2015. 6.
- 한국수출입은행,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 및 시사점, 2014. 12.
- 러시아연방통계청, 2015 러시아 보건통계 모음집, 2015.
- OECD, Health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2015.

[국문초록]

## 한국 의료기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관한 연구

신태섭(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러시아 정부는 2015년 극동지역 의료산업 개선을 위해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 결과 한국 의료기관들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환자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방향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진출에 있어서 강점과 기회로써 작용한다. 반면에 자유항법의 하위규정 제정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완전성과 러시아 정부의 낮은 신뢰도는 약점과 위협으로 대두된다. 이에 한국 의료기관은 자유항법의 하위규정의 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함으로써 진출 시기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진 연계 전문클리닉 모델(1단계 모델)’을 구축하여 진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높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한·러 보건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러시아 내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미네스타 프로젝트’ 수행이 요구된다.

주제어 : 한국 의료기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극동 러시아, 의료 해외진출, 한국형 미네스타 프로젝트

## **A Study on the Korean Medical Institution's Strategies for Advancing into Free Port of Vladivostok**

Shin Tae Seop

*Kim & Hyun*

### **=ABSTRACT=**

The Russian government enacted the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to improve the medical industry in the Far East in 2015. As a result,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advancing into Free Port of Vladivostok. Increased demand for high-quality Korean medical services from Russian patients and the activ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of the Russian government serve as strengths and opportunities for advancing into Free Port of Vladivostok. On the other hand, the legal imperfections caused by the delay in the establishment of sub-regulations for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and the low reliability of the Russian government are both weaknesses and threats. Therefore, Korean medical institutions will need to carefully consider the timing of advancing into Free Port of Vladivostok by closely monitor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ub-regulations of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And it is the most realistic model for Korean medical institutions to establish 'Professional clinic model linked with health screenings(1st stage model)'.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clude a 'MOU for Cooperation on Health and Medical Care between Korea and Russia' with the Russian government and should also carry out the 'Korean Minnesota Project'.

Keyword: Korean Medical Institution, Free Port of Vladivostok, Far East of Russia, Overseas expansion of medical services, Korean Minnesota Project